

기획연재 ■ 이케다 사법서사의 일본 통신 ①

인터뷰 ■ 오오시로 세츠코 일본 전국사법서사여성회장

# 부부별성제(夫婦別性制) 실현 위해 한국 여성법무사회와 교류하고 싶습니다

구성(舊性)사용운동 계기로 2000년 전국 조직 설립, 여성 사법서사 10% 가입  
여야당 정치인과의 적극 소통으로 여성·사회정책 참여 활발, 정치적 진출은 낮아

오오시로 세츠코(大城節子) 일본 전국사법서사여성회장(56·도쿄회)은 지난 2008년 회장에 선출되어 1년 남짓 여성회를 대표해 활동하고 있다. 1985년에 사법서사 시험에 합격, 87년에 개업했다. 아래의 인터뷰는 한국의 전국여성법무사회에서 보내온 질문지를 필자가 한국어로 번역해 오오시로 회장에게 전달, 보내온 답신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으로 진행, 작성되었다. <편집자>

## ‘여성정책 실현’이 설립 목적, 남성도 찬조회원 가능

▶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도 2004년 전국여성법무사회(이하 ‘전여법’)가 결성되어 현재 전체 267명의 여성법무사 중 80%에 가까운 261명이 가입,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사법서사여성회(이하 ‘전사녀’)의 설립 배경과 회원 현황이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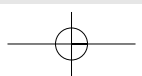
한국 법무사회에서 저희 사법서사여성회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뷰를 요청해 주셔서 무척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희 여성회는 지난 1997년에 ‘전국 사법서사 여성의 모임’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 사회의 ‘구성(舊性·결혼 전 여성의 성)사용제도’ 실현운동에 여성 사법서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부부별성 등 여성관련 사회정책에 힘을 실어보자는 취지에서 조직화를 시작해 2000년 임의단체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4월1일 현재, 우리 여성회에 가입한 사법서사는 전국 19,334명 중 약 2%인 540명입니다. 저희 여성회는 남성 사법서사들도 찬조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해 540명 중에 여성 사법서사는 약 50%, 276명이고, 전국 여성사법서사의 전체로 볼 때는 2,706명 중 약 10%가 가입해 있습니다. 남녀 공동참여형 운영이 특징인데, 여성 사법서사들의 가입이 의무화 된 것은 아니라 참여율이 한국처럼 높지는 않습니다.

▶ 한국의 ‘전여법’은 남성은 가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사녀’에서 남성 회원들의 가입을 허용하고, 공동참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과반이 넘는 남성회원들의 참여로 인해 여성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까?

‘전사녀’ 결성의 큰 목적이 부부별성을 중심으로 하



는 여성정책의 실현에 있었기 때문에 활동이나 연구에 있어 여성 사법서사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책 실현에 어려움을 준다는 생각에서 여성회의 활동 목적에 동의하는 남성 사법서사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여성회의 활동 목적은 어디까지나 여성 정책의 실현이고, 남성 회원은 그것을 창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로 인해 활동이나 연구가 저해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성 회원들이 여성회의 활동 방침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주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성 단체로서 특수한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현재 전사녀에서는 남녀 공동참가형 운영이 자연스러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집행이나 운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여성 사법서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회원의 수가 과반수가 넘는다 해도 여성회의 본질을 잃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부부동성제, 여성사법서사 활동 제약하는 근본문제

▶ 일본의 구성사용제도와 부부별성제도가 '전사녀' 결성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성사용 실현운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고, 그 운동과 여성회 결성 관련성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일본에서 구성 사용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 전에는 여성의 결혼 전 성은 호적상의 성으로 등록하는 것밖에 인정되지 않아, 등록 후 결혼이나 이혼 등에 의해 호적상 성의 변경이 있을 때는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여성 사법서사들도 결혼 등으로 성 변경이 있을 때 이런 등록명 변경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이로 인해 고객이 동일인물인지를 혼돈스러워하는 등 사법서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등록명 변경이 명부 등으로 공표되기 때문에 결혼이나 이혼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필연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 정신적 고통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현재는 '전사녀' 발족 전부터 구성사용제도 도입 운

동을 했던 사법서사들과 당시 일사련 집행부의 협력으로, 일단 신고를 하면 사법서사 등록원부에만 변경 사항이 기재되어 그 외 공표되는 명부 등에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고, 결혼이나 이혼으로 성 변경이 있을 때도 구성사용 신고만 하면 변경 전의 성으로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되어 결혼 후에도 사법서사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구성사용제도 도입만으로는 결혼에 의해 성을 변경한 여성 사법서사가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상은 구성 사용이 지장을 주지는 않게 되었지만, 은행 계좌 개설, 인감 등록 등 절차 수속에는 호적상의 성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많고, 결과적으로 업무상의 성이 구성인 것을 원인으로 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호적상 별성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부부별성의 문제가 단지 여성사법서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넓히면서 '전사녀' 결성에 박차가 가해진 것이지요.

▶ 한국 '전여법'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와 전회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고, 여성법연구위원회 등 일상의 위원회 조직이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사녀'의 조직구성 체계와 특별 프로그램, 일상활동 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여성회 역시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임원으로 회장과 부회장, 이사, 회계감사를 두고 있으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그밖에 사무국과 상담역 명예회장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이사회에서 하는데, 때때로 회원들과 E-메일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원들에게 FAX와 E-메일을 통해 각종 소식들을 전달하고 있는데, 빠른 정보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원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연수회도 2000년부터 시작해 연간 3회



전사녀는 여성정책 실현을 위해 여성 국회의원들과 활발한 교류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공명당 여성국회의원단과의 간담회 모습(왼쪽 줄이 전사녀 회원들), 간담회 후 이케노보우 야수코 참의원 의원과 명함을 건네고 있는 오오시로 여성회장(오른쪽)과 타기가와 아오이 사법서사, 마쓰 야키라 국회의원(아랫 줄 가운데 흰옷 입은 사람)과 함께 한 전사녀 회원들.

정도 지역별로 순회하며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 연수회 참가자는 약 30명 정도이며, 2008년도에는 3월 도쿄에서 '사업 승계' 관련 연수회, 9월 오오이타현에서 총회 개최와 함께 '세법'에 관해 연수회를 열었고, 11월에 다시 도쿄에서 '도산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6월6일에 호세대학 대학원의 후쿠이 아츠시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올해 5월21일부터 실시되는 일본의 형사사법제도의 역사적인 변혁이라고 할 만한 '재판원(배심원) 제도'와 관련한 '형사소송법 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밖에 '전국사법서사 여성의모임'을 연 1회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달리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소위원회 제도는 없습니다.

### 여성·시민·사법서사제도 정책제언 등 국회활동 활발

▶ 앞서 '전사녀'의 출범 목적이 부부별성제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외에 공익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 여성 사법서사들이 법률 전문가로서 일본 사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부부별성제 운동이 계기가 되어 기타 여성관련 정책이나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여러 제언과 국회활동을 정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18일에는 중의원 대의원회관에서 여성회 임원과 공명당(여당) 여성의원단과의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기초생활보호자 중 모자(母子)가정, 즉 여성가장에 대한 특별생활비 가산(加算)제도의 조기 부활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간이재판소의 사물관할 인상에 의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요청하는 의견을 여당에 제출하기도 했고, 소비자운동 관련 단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운동이나 소비자청 설치를 위한 활동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부동산등기 온라인 신청 촉진을 위해 시스템 장해 시 필요한 대책도 제언하는 등 여성정책, 시민정책, 사법서사제도 정책 등 다방면의 국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성 사법서사들의 사회적 인지도와 신뢰도는 남성 사법서사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업무상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보다 친밀한 법률가, 섬세한 법률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여성 사법서사들의 인지도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여성 사법서사들의 정치적 진출은 우리 '전사녀' 회원으로 현재 참의원 의원으로 활동하는 의원 한 분이 계신 정도이지만, 여성회 활동을 통해 정치인들과의 의견교환 기회는 꽤 많은 편입니다. 여야당을 불문하고 정당들은 항상 저의 여성 사법서사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존중해 주며, 국회 질의에도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 '전사녀'가 임의단체로 발족했는데, 일사련 및 지방 사법서사회 등 법정 조직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한국의 경우, 협회나 지방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법무사의 비율이 0.02% 정도로 매우 낮다고 하는데,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와 지방 단위 사법서사회들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회의 연수나 총회가 열릴 때 후원을 받기도 하고, 경제적인 지원 등의 협력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조직의 집행 등 책임과 권한이 있는 주요 임무에 종사하는 여성 사법서사의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현재 여성 사법서사가 일사련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는 회장 1명, 부회장 4명, 전문이사 1명, 상무이사 1명, 상임이사 6명 중 1명입니다.

### ‘일사련’에 여성임원 적은 이유, ‘여성정책’ 부재 때문

▶ 이렇게 여성 사법서사의 임원 참여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성 사법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인가요?

여성 사법서사들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의 근본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회의 성역할 분담 문화와 여성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일본 여성들의 사회 진출 역사는 아직도 짧습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 활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여성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육아와 자녀교육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지요.

하지만 일본 사회는 지금까지 육아와 교육문제의 중요성에 무관심했습니다. 미성년자는 선거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미성년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고, 여성들은 자녀양육과 교육에 부담이 많으니 결국 ‘소자녀화’ 문제가 생겨났지만, 이 역시 특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생활보호 모자가정의 가산수당 제도마저 없애 버려서 이래저래 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제도는 척박하기만 합니다. 여성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도 소장파들의 소리라며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을 위해서는 보육소나 아동관 등 육아교육 시설을 늘리고, 정규·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출산·육아휴업이 불이익 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녀교육에 대한 국가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의 구체적인 지원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사회가 그런 노력을 해오지 않았기 때

문에, 사법서사라 할지라도 ‘여성’이라는 사회적 처지를 벗어날 수 없는 이유로 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한국의 ‘전여법’에서는 여성 법무사의 비율에 맞는 여성 임원의 등용을 제도화하는 ‘여성할당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일사련에도 여성임원 할당제도가 없습니다만, 일사련이나 각 지방 사법서사회는 강제 입회제도 아래에 만들어진 조직이고, ‘전사녀’는 여성의 입장에서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나 활동에 의의를 두고 있어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전사녀’ 조직 차원에서 일사련 등의 단체에 적극적인 혜택을 받아야 할 필연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한일 여성회간 교류와 유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류를 한다면 어떤 정보와 분야를 하고 싶습니까?

무엇보다 저희 여성회의 출범과도 관련이 있는 ‘부부 별성제’에 대한 정보교환을 간절히 바랍니다. 사법서사의 업무에서는 대리권의 범위 등을 비교 검토하는 등 직무범위와 관련한 정보도 상호 교류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남성중심 문화여서 같은 사법서사라 하더라도 ‘남자가 나오라’는 요구를 받는 현실이 존재합니다. 출산 시에도 보육소의 부족과 낮은 사회적 이해도 속에서 여성 개인의 희생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사무실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점에서 같은 여성으로서 한국 여성법무사들과의 교류와 유대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

**이케다 가즈히코(池田和彦) 사법서사** | 1994년 일본 교토에서 사법서사와 행정서사를 겸업해 개업했다. 2004년부터는 사회보험노무사와 함께 합동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미래를 여는 법무사의 모임’(http://www.ilaw.net) 일본인 회원으로 능숙한 한국어를 자랑하며 일본의 법조계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주는 등 한일교류의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